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10:00부터 17:00까지”를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안 제8조(종전 제10조)는 제10조로, 안 제9조(종전 제11조)는 제11조로, 안 제10조(종전 제12조)는 제12조로, 안 제11조(종전 제13조)는 제13조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시민안전 체험관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p>	<p>서울특별시 시민안전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서울특별시 시민안전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의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u>서울특별시 시민안전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u>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 ----- ----- ----- ----- <u>서울특별시 시민안전 체험관</u> ----- ----- ----- -----</p>	<p>제1조 (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u>체험관</u>의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기능은 일반 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방재교육을 수행한다.</p>	<p>제2조 (설치 및 기능) -- ----- <u>서울특별시 시민안전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u> ----- ----- -----</p>	<p>제2조 (설치 및 기능) (개정안과 같음)</p>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개관 및 휴관) ① ~ ② (생략)</p> <p>③체험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하절기(3월~10월): 평일 10:00부터 17:00까지, 공휴일 10:00부터 16:00까지</u></p> <p>2. <u>동절기(11월~다음해 2월): 10:00부터 16:00까지</u></p> <p>④ 체험관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전부터 폐관시간 2시간전까지로 한다.</p> <p>⑤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제3항의 개관시간 및 제4항의 매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p> <p>⑥ 시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관시간 또는 매표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한다.</p>	<p>제3조(개관 및 휴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체험관의 개관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p> <p><삭 제></p> <p>④ ----- ----- -----제3항의 개관시간----- ----- ----- ⑤ ----- ----- ----- 개관시간----- ----- ----- -----</p>	<p>제3조(개관 및 휴관)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체험관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p> <p>(개정안과 같음)</p> <p>⑤ ----- ----- -----제3항의 개관시간----- ----- ----- ⑥ ----- ----- ----- 개관시간----- ----- ----- -----</p>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체험관 이용료)</p> <p>①<u>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2세 이하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국가유공자등에우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6.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기타 시장이 체험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②제1항의 체험관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시민에게 체험관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9조(체험관 이용권) ①시장은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체험관 이용권을 발행한다. ②체험관 이용권의 규격, 발행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p>제10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훼손 및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u>에 의한다.</p>	<p>제8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 ----- ----- ----- ----- ----- ②----- ----- ----- <u>「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u> ----- -----</p>	<p>제10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 ----- ----- ----- ----- ----- ②----- ----- ----- <u>「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u> ----- -----</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1조 (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p>제9조 (보험가입)----- ----- ----- ----- -----,</p>	<p>제11조 (보험가입)----- ----- ----- ----- -----,</p>
<p>제12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매점 2. 기념품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p> <p>②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기타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u>에 의한다.</p>	<p>제10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 ----- -----,</p> <p>1. --- 2. ----- 3. ----- -----</p> <p>②----- ----- ----- ----- -----,</p> <p>③기타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u>」-----,</p>	<p>제12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 ----- -----,</p> <p>1. --- 2. ----- 3. ----- -----</p> <p>②----- ----- ----- ----- -----,</p> <p>③기타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u>」-----.</p>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규칙) ----- ----- ----- --.	제13조 (규칙) ----- -----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체험관”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개관 시간 및 제4항의 매표시간”을 “제3항의 개관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개관시간 또는 매표시간”을 “개관시간”으로 한다.

③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하고, 제1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의 대처능력 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u>서울특별시시민안전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u>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 여 설치하는 <u>체험관</u>의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기능은 일 반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 험을 통한 방재교육을 수행한다.</p> <p>제3조(개관 및 휴관) ① ~ ② (생략) <u>③체험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u> 1. <u>하절기(3월~10월): 평일 10:0 0부터 17:00까지, 공휴일 10:00 부터 16:00까지</u> 2. <u>동절기(11월~다음해 2월): 10:0 0부터 16:00까지</u> <u>④ 체험관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 분전부터 폐관시간 2시간전까지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 (목적) ----- ----- -----<u>서울특별시 시민안전 체험관</u>----- -----</p> <p>제2조 (설치 및 기능) ----- ---<u>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u>----- -----</p> <p>제3조(개관 및 휴관) ①~② (현행과 같음) <u>③체험관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u></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⑤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u>제3항의 개관시간 및 제4항의 매표시간</u>을 변경할 수 있다.</p> <p>⑥ 시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u>개관시간 또는 매표시간</u>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한다.</p>	<p>⑤ ----- -----<u>제3항의 개관시간</u> -----,</p> <p>⑥ ----- ----- -----<u>개관시간</u>----- -----</p>
<p><u>제8조(체험관 이용료) ①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2세 이하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국가유공자등에우뮷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6.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기타 시장이 체험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u>②제1항의 체험관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u></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시민에게 체험관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9조(체험관 이용권) ①시장은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체험관 이용권을 발행한다. ②체험관 이용권의 규격, 발행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제10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훼손 및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u>에 의한다.</p>	<p>제10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p>
<p>제11조 (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p>제11조 (보험가입)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점 2. 기념품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p>②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기타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u>에 의한다.</p>	<p>제12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기타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u>」-----.</p>
<p>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 (규칙) (현행과 같음)</p>

(다음 페이지에 계속)